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 - 28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문화기본법(제정 2013.12.30, 시행 2014.3.31)」과 「지역문화진흥법(제정 2014.1.28, 시행 2014.7.29)」 등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이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생활문화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부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4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운동 전개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 시장은 매년 생활문화를 통하여 주요 대회에 입상하거나 국내·국외에 우리 시의 위상을 선양한 사람이나 단체(이하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라 한다) 또는 생활문화 진흥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단체 및 동호회의 특별지원)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에게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 사용하게 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지원 및 평가

2. 생활문화 경진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선정
6.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7.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지원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문화진흥법 - 제7조(생활문화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문화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9조(지원 및 예산·결산)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공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강 병 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민간경상 보조금						
	소계						
세출	민간경상 보조금	500,000	550,000	600,000	600,000	600,000	2,850,000
	소계	500,000	550,000	600,000	600,000	600,000	2,8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00,000	550,000	600,000	600,000	600,000	2,850,000
	일반회계	500,000	550,000	600,000	600,000	600,000	2,85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